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우리는 청렴으로 맺은 사이다 2

- 부패방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2021. 9.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감 사 관〕

목 차

Ⅰ. 「청탁금지법」의 이해 ····· 1

Ⅱ.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 4

Ⅲ.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 9

Ⅳ.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안내 ····· 10

Ⅴ.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 13

Ⅵ.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 18

경남교육 아이좋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감사관
청렴감사

1 청탁금지법 이해

❍ **목적**: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2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 **14가지 대상 직무**

– 인가·허가등 처리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입학·성적등 업무 처리·조작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 사유 7가지**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부정청탁 신고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공직자등)	⇒	(소속기관장)	⇒	조치사항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직무 참여 일시 정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및 조치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일반인	공직자등	
과태료 부과 대상 X 징계대상 O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기부, 후원, 증여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등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기념품·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등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공직자등)	(소속기관장)	조치사항
·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 ·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의사 표시 요구** ·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 직무 참여 일시 정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감사관
청렴감사

1 행동강령의 이해

❍ **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동방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 요구 증대로 행동강령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

❍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및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임

❍ **행동강령의 주요 용어**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의 소관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 공무원 내부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규정함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직무관련자및 직무관련공무원을 판단하는 주된 요소이므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은 주로 공무원 본인의 하급자, 계약상대자등 소위 "갑을관계"에서의 "을"이 직무관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선 물**

–선물이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 **향 응**

–향응이란 접대와 편의제공 등을 의미하며 접대의 종류로는 식사, 음주, 골프 등의 제공이 있으며 편의 제공으로는 교통, 숙박, 골프 예약 등이 있음

2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무원은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해와 상충 되는 직무를 사전에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관계 직무회피는 지연·혈연·학연 등 개인적 연고관계, 재산관계, 과거의 경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 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 **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 건설담당 공무원이 수주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에게 학연을 이유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인사권자가 고향 후배라는 지연을 이유로 특정인의 근무평점을 잘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됨

· **허위 출장 신청을 한 후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가족과의 저녁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판단됨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함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 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원 자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됨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게 하거나 자신이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나,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타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인사 담당자에게 희망 전보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3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됨

· 공무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교육청 간부가 관내 학교 행정실장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교구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이권개입 사례**임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무원에게 소개해서도 안 됨. 이 때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임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공무원은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됨**

· 공용물이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 사무용, 사업용 또는 주거용 물건을 의미하며, 사적 사용·수익이란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 목적 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함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임

· **금품 등 수수란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함**

· 공무원은 과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도 안 됨(**금품 수수 제한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대상 임**)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소속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됨

· 이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이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할 때에는 제공할 수 있음

· 불필요한 관행의 근절– **인사철, 명절에 관행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안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관행의 근절이 필요함**

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

· **경조사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소속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이나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가능함

–이는 계약, 지도·점검, 단속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임 **(개별적인 경조사 통지가 불가함–공개적인 통지만 가능)**

· **경조금품 수수 제한**

–공무원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과다한 경 조금 지출이 부패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경조금품 지출도 5만원 범위 안으로 제한 됨. 단 예외적으로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자신이 속한 각종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등은 가능**

–이는 경조금품이 뇌물의 전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바람직한 경조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임

5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구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공립유치원
행동강령책임관	감사관	행정지원과장	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과장)	교감 (교감 없는 학교는 교무부장)	원감

❍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 행동강령 관련 각종 상담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 이해 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등

·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만일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업무담당자가 신고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됨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공무원은 수수 즉시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함

6 Q&A

Q1. 각급 **학교장들의 자발적 모임(단체장 협의회, 교장단 협의회 등)에 연간 회비를 학교회계 예산(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한지?**

A1. 직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사적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학교장협의회 등) 회비는 **원칙적으로 학교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지출**

※ 법령 등 설립근거 없는 사적 임의단체의 적립식 회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Q2.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2.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임

Q3. **기관장의 외부강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A3.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등의 출강 등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Q4.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는 해당하나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하급자에게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되는지?

A4. 경조사 통지 제한에 있어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는 **경조사의 당사자(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지 대상이 하급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감사관
청렴감사

1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법

▶ **공포일: 2021년 5월 18일**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2 법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기관**

※「청탁방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 제외

❍ **(각급 국·공립학교의 교직원) 교장(감), 원장(감), 수석교사, 교사,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학교의 직원, 기간제교사 등**

· 법령에 따라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교직원에 포함

·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예시)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등

3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0개 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담음**

신고 · 제출 의무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직무관련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 금지행위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안내

감사관
청렴감사

1 개요

❍ **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2019. 4. 16.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배경**
·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 근거 마련

❍ **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 금지 및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 **적용**: '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2 대상 및 개념

❍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
※ 국·공립·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단체, 개인 등 부정청구등에 해당될 경우 부정수익자가 될수 있음

❍ **공공재정지급금**
· (정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지급형태) 금전, 채권, 물품, 상품권, 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 (지급특성)
– 보조금 등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제공
– 국가 및 지자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연구개발 사업수행, 공공 목적 수행 기관 운영 등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
–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금품등
–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한 금품등
–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예: 셋째자녀지원비, 유아학비, 등)

■ **교육자치단체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고시) 별표1(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 및 그 하위법령,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으로서, 다음 23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통계목 >

310-01	보상금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10-03	포상금등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20-01	민간보조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320-07	이차보전금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340-01	해외경상이전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350	출연금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40-01	학교운영비(지원금)
620-01	인건비지원	640-02	목적사업비(지원금)
620-03	목적사업비	640-03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40-04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교부한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이 해당됨**

❍ 부정청구등 구분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 부정청구등 구분 >

구 분	내 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제재 조치

❍ 환수 및 제재부가금

· **환수 조치**: 부정이익 + 이자(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 통지)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구분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500% (5배)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과다 청구하여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00% (3배)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200% (2배)

· 오지급된 경우 제재부가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부정이익과 이자는 환수 조치

· 제재부가금 적용배제(법 제11조) 및 면제등(법 제10조)

·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이의신청 가능: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밝혀 문서로 신청 가능

❍ 명단 공표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 **공표**

–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 기록 · 관리

· 지급중단 및 부정이익등 환수 등 처분 등을 한 경우 기록매체에 기록 관리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개별법에 환수 규정만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라 환수 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진행

❍ 법률(법률에 근거한 시행령 · 시행규칙 포함)이 아닌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 우선 적용

5 Q&A

Q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도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학교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Q 공·사립학교에서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교부 받은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목적사업비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Q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본관 교실 바닥 공사'로 집행한 경우 부정청구등 유형인 '목적외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인 목적사업비를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목적(용도)과 달리 사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 해당된다고 보여짐

·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령·자치법규 등에서 규정한 예산 전용(변경)기준을 준수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경남교육 아이좋아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감사관
청렴감사

1 신고 시스템 현황

[감사관 소관 부패 차단 시스템]

① **익명 신고 센터**
-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익명 또는 기명 가능(외부 민간업체 위탁 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 [부패비리신고]
- ▸ **갑질신고센터: 익명 또는 기명 가능(외부업체위탁)**

② **일반 신고 센터 → '국민 신문고' 로 연결**
- ▸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직자갑질신고, 유치원 비리 신고

③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제도 운영
- ▸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신고자가 안심변호사에게 E-메일 상담신청)

2 추진 현황

❍ **부패 · 공익신고 인식 확산**
- · 청렴교육 시, 부패·공익신고 제도 안내
- · 다양한 방면의 홍보(청렴 소식지 및 청렴 교육 자료 활용,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 · 부패·비리 신고 안내 문자 발송(공사, 물품, 급식 계약 대상자 4회 이상)

❍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 지원 운영 내실화**
- · 부패·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 ·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지속 운영
- · 사회단체와 업무 협약(MOU) 체결(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내용: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부정청탁 또는 금품·향응·편의를 받거나 요구, 제공 또는 약속 금지, 갑질 행위 등 금지

❍ **보호제도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정 정비**
- · 부패·공익신고 관련 규칙 제정 및 개정 공포(2021.8.26.)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3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 · 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공익신고,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 감사관>**비실명 대리신고(안심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우편/방문상담**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 : 055-210-5229, **전화상담** : ☎ 1577-8539

4 부패 · 공익신고 개념 정리

「부패신고」란?

다음의 **부패행위**를 소속 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2021. 4. 20.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 대상법률에는 471개로 확대**

「교육부 해당 공익침해 대상 주요법률(9가지)」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5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구분	내용	부패신고	공익신고
비밀보장	신고자와 협조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등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할 수 있음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6 부패 · 공익신고자 보상 안내

구분	대상	부패신고	공익신고
보상금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	최대 30억원	최대 30억원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포상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 증진한 경우	최대 2억원	
구조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차 주요 개정사항

- '21.4.20. 공포 -

□ ('21.4.20. 시행) 공익신고 대상법률 4개 추가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법률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초·중등교육법	기타 공익	▪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0조의4제1항, 제67조제4항)
		▪ 학교생활기록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의6제1항, 제67조제2항제4호)
		▪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제2항, 제67조제2항제1호)
사립학교법	기타 공익	▪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과태료 1천만원(제54조제3항, 제74조)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는 행위 (제29조제6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9조제6항, 제73조의2)
		▪ 학교법인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 사업 정지명령(제46조)
근로기준법	기타 공익	▪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 500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114조제1호)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행위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69조, 제110조제1호)
		▪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조, 제107조)
고등교육법	기타 공익	▪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3조, 제57조, 제64조제3항)
		▪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4조제9항, 제64조제1항)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행위	▪ 학교폐쇄명령(제62조제1항제3호)

※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1.4.20.부터 신고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바로 알기

❍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 **목적:** 안심변호사 지정·운영으로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

❍ **세부 운영 사항**

목록	내용	
안심변호사란?	부패·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업무 범위: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리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	
위촉 변호사	○송경준(법무법인 양재) skj0322@hanmail.net ○박미혜(법무법인 믿음) pmihye@gmail.com ※ **E-메일을 통해서만** 상담 신청 가능	
신고 대상 (내부 신고자에 한함)	○**부패신고** ① 공직자가 직무 관련 그 지위·권한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②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③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제출 서류	신고자 → 변호사	○위임장, 증거 자료,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분증 등
	변호사 → 교육청 (신고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서(변호사 이름)**, 증거 자료 ○위임장,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분증 등☞**신고자 동의 없이 열람불가** ※ 변호사 대리신고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 접수
대리 신고 절차	**①상담신청** **부패·공익행위 신고자** 안심변호사에게 E-메일 상담신청 ⇒ **②상담실시** **안심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 ⇒ **③대리신고** **안심변호사** 감사관에 대리신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 **④조사실시** **감사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 **⑤결과 회신** **(감사관)** 조사결과를 안심변호사에게 통보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	
변호사 비용 지급 요건	**(지정 변호사)** 경남교육청이 직접 지급 **(지정 외 변호사)** 지정 변호사에 준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다만,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 받으면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문의:** ☎ 055-210-5203~4, 5209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2021. 9. 14.
감사관
(210-5203)

▣ 관련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약칭) 제27조의2

▣ 측정대상 및 조사방법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부패사건지수]

❍ 측정대상: **공사관리·감독, 물품분야 계약상대자(학교 5백만원이상) 및 교직원**

- 본청, 전 직속기관, 공립고·특수·각종학교 45교
- 6개 교육지원청(진주, 거제, 양산, 의령, 남해, 산청) 및 소속 공립 초·중학교 156개

❍ 측정항목

- 【외부청렴도】 부패인식 + 부패경험
-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조직문화,부패방지제도) + 업무청렴(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공정성)

❍ 조사방법: 전화설문,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설문

❍ 설문 배점: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69점	1.7~2.99점	3~4.39점	4.4~5.77점	5.8~7.19점	7.2~8.59점	8.6~10점

▣ 주요 사항

❍ **외부청렴도**: 한시적으로 **공사관리·감독, 물품 계약 2개 영역** 및 예체능 분야* 측정

* 예체능 분야(축구부, 야구부, 권익위 지정학교 중 그 외 체육 종목 학교, 체육고) → 종합점수 미반영
* 설문 항목 1개 신설(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률)

❍ **내부청렴도**: 설문 항목 3개* 신설

*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 정책고객평가(전문가,정책관련자,학부모): 설문조사는 하나 종합청렴도에 미반영

▣ 향후 추진 일정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자료 제출(국민권익위): 2021. 7. 26.(월)

❍ 청렴도 측정 실시(국민권익위): 2021. 9월 ~ 11월

❍ 현장실사·점검(국민권익위): 2021. 9월 ~ 11월

❍ 결과 분석 및 발표(국민권익위): 2021. 12월(예정)